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18. 11. 20(화) 14:00

□ 장 소 : 청도군청 제1회의실

□ 참석자 : 10명(심의위원)

< 회의 결과 요약 >

○ 2019년~2022년 의정비 기준금액 결정

(월정수당) 2019년~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의정활동비·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 의정비 심의회 회의록

발언자	내 용
기획담당	개회선언, 위원소개
군 수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기획담당	다음은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임시위원장으로 최고 연장자이신 ○○○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기획담당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이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직으로 오셔서 위원장 선출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내 용
임시위원장	<p>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p>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p> <p>먼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p> <p>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위 원	위원회 경험이 많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없습니까 ?
전 위원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그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3타)
휴 회 (10분)	
기획담당	다음은 청도군 의정비 심의회를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방금 선출되신 ○○○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p>안녕하십니까 ?</p> <p>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장 ○○○ 입니다.</p> <p>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훌륭한 여러 위원 중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p> <p>아울러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에 매진하시는 이승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위원회의 임무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p>

발언자	내 용
	<p>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야함에 따라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종합하여, 청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에 위원님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p> <p>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p> <p>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회의공개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록, 위원명단, 최종 결정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p>
위 원	위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을 위해 비공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회의 비공개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전원 찬성)
위원장	<p>회의는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p> <p>다음은 회의록 공개시 위원 성명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위 원	저는 위원들의 자율적인 발언을 위해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내 용
위원장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 공개시 위원 성명은 비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8대 청도군의회 의정비 심의·결정을 위해 준비된 회의자료를 기획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p>기획담당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p> <p>다음은 질문·답변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위 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담당	관외여비의 경우 출장갈 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위 원	그럼 여비에 대해서도 인상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까?
기획담당	인상여부가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지에 대해 의결을 하시면 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예 따라 여비 지급범위도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원	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활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도 며칠전부터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상하는 쪽이 다수 여론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분별 심의를 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은

발언자	내 용
	<p>회의자료를 보시고 의정비 지급범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비 인상도 필요하지만 군민정서를 생각했을 때 무리한 인상은 주민들의 비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p>
위 원	<p>현재 2018년도 청도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북 군부 중 중간정도이며, 월정수당은 경북 군부 평균월정수당보다 조금 높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보다 우리군 재정 여건에 맞게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p>
위 원	<p>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만큼 인상했을 때 2019년도 월정수당은 어느 정도 인상되니까?</p>
기획담당	<p>2018년도 월정수당 대비 월 4만2천원 정도 인상됩니다.</p>
위 원	<p>제 생각도 2019년~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p>
위원장	<p>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부탁드립니다.</p>
위 원	<p>재정자립도에 비춰보면 월정수당이 경북 타군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나, 의원 1인당 주민수에 비하면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p>
위 원	<p>의원님들이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p>
위 원	<p>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게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적절한 결정안인 것 같습니다.</p>

발언자	내 용
위 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할 위원이 없습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비지급 범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 의원여비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를 준용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지방의원의 임기 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없이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동일하게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언자	내 용
	<p>다음은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현재 의정비 지급액이 연간 3,286만원으로, 월정수당은 연간 1,966만원, 의정활동비가 연간 1,320만원입니다.</p> <p>만약, 올해 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적용하면 연 2,017만원으로 '18년 대비 연간 51만원이 증가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방법과 월정수당 최소금액 및 최대금액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p> <p>먼저 2019년도 첫째 월정수당 인상여부에 대해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p> <p>‘인상’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p>
전 위원	(전원 찬성)
위원장	<p>다음은 인상폭에 대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p> <p>이것은 주민의견수렴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p> <p>참고로 2020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수렴절차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p> <p>아까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정수당을 2019년~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오.</p>
전 위원	(전원 찬성)
위원장	<p>그럼 최종적으로 2019년도는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p>

발언자	내 용
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p>이의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는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이상으로 제8대 청도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2018년 청도군 의정비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p> <p>모두 수고하셨습니다.</p> <p>회의진행이 미숙하였음에도 잘 협조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p>